

미국 헌법상 선거조항의 해석¹⁾

I. 사건개요

2020년 인구조사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새로운 연방하원의원 선거구(congressional district) 지도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시민 단체와 개인 유권자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이 선거구 지도가 당파적 게리맨더링(partisan gerrymander)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헌법 제1조 제10항의 “모든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규정을 비롯하여 주헌법상의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조항을 원용하였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만든 선거구 지도를 파기하였다. 주대법원은 주의회가 고의적으로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를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확정하였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를 확정할 당시 연방헌법상 선거조항(Elections Clause, 연방헌법 제1조 제4항 제1호²⁾)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 조항은 각 주의 의회가 연방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을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련의 소송과정을 거쳐 연방대법원에 올라온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주의회가 연방헌법의 선거조항에 따라 연방선거를 운용하는 규정을 정함에 있어 주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전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 Moore v. Harper, 600 U. S. 1 (2023) (2023. 6. 27. 선고).

2) 미국 헌법 제1조 제4항 제1호 (art. I, § 4, cl. 1)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II. 쟁점 및 판단

1. Roberts 대법원장의 법정의견(6인 의견)³⁾

가. 소송의 전개

미국 연방헌법상 선거조항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의회에 연방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⁴⁾ 또한 연방의회 스스로 그러한 규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가 연방하원의원 선거의 실시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⁵⁾

2020년 인구조사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새로운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지도(이하 ‘2021 선거구 지도’라 한다)를 확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선거구 지도가 당파적 게리맨더링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법원에 제소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1 선거구 지도가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이고 면밀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파적 게리맨더링 문제는 주헌법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nonjusticiable) 판단하였으나,⁶⁾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Harper v. Hall, 380 N. C. 317, 868 S. E. 2d 499 (2022), 이하 ‘**Harper I 판결**’이라 한다). 주대법원은

3) Roberts 대법원장, Sotomayor, Kagan, Kavanaugh, Barrett, Jackson 대법관의 의견.

4) Arizona v. Inter Tribal Council of Ariz., Inc., 570 U. S. 1, 8 (2013).

5) Ibid.

6)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9년 6월 27일 Rucho v. Common Cause, 588 U. S. ____ (2019) 판결을 통해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연방법원’의 관할을 벗어난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라며 사법심사적합성(justiciability)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관한 내용은 ‘헌법재판연구원, 당파적 게리맨더링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관할권 유무 여부, 세계헌법재판동향 2019 제6호, 11-30쪽’ 참고). 따라서 현재 이 사건은 ‘주법원’에서의 당파적 게리맨더링 심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파적 게리맨더링 문제가 연방법원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였지만,⁷⁾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원의 심사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실시하였다. 또한 연방헌법상 선거조항이 주의회에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독점적이고(exclusive) 독립적인(independent)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주대법원은 2021 선거구 지도의 사용을 금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여 주의회의 선거구 재획정을 감독하거나, 필요하다면 법원이 재획정하도록 하였다. 주대법원의 판결로부터 이틀 후인 2022년 2월 17일, 주의회는 수정된 선거구 지도를 채택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선거구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2022년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 전문가들이 만든 잠정적인 선거구 지도를 채택하였다. 2022년 2월 25일, Tim Moore 주하원의장을 비롯한 주의회 측 피고들⁸⁾은 연방대법원에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제출하며 연방헌법 선거조항을 언급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의 판결을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긴급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거부하였지만 이후 상고를 허가하였다.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한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수정된 선거구 지도에 관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에서 주대법원은 주의회가 수정한 선거구 지도는 Harper I 판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였다(Harper v. Hall, 383 N. C. 89, 125, 881 S. E. 2d 156 (2022), 이하 ‘**Harper II 판결**’이라 한다). 이후 주대법원은 주의회 측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Harper II 판결 일부를 재심리(rehearing)⁹⁾하였고, 결국 Harper II 판결에서 내렸던 수정된 선거구 지도에 관한 판단을 철회하고,¹⁰⁾ 당파적 게리맨더링이 노스캐롤라이나 주헌법 하에

7) Rucho v. Common Cause, 588 U. S. ___ (2019).

8) 이 피고들은 연방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상고인이 된다.

9) 재심리(rehearing)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동일한 법원에서 논점을 재고하는 것으로, 주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 의도치 않은 결과의 발생, 상황의 변화, 판사의 오류 등을 이유로 신청된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상소절차에 관한 규칙(North Carolina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Rule 31.(a)에 따르면, 재심리를 신청할 때에는 법원이 사실이나 법률을 간과하였거나 잘못 해석하였다는 점을 자세히 명시하고, 그러한 신청인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포함해야 한다.

10) 수정된 선거구는 사법심사적합성 여부에 관한 잘못된 판단의 산물이므로 합헌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서 사법심사적합성을 갖는다(justiciable)고 판단하였던 Harper I 판결을 연방 대법원의 Rucho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파기하였다(Harper v. Hall, 384 N. C. 292, 299, 886 S. E. 2d 393, 399 (2023), 이하 ‘**Harper III 판결**’이라 한다). 그러나 주대법원은 Harper I 판결이 배척하였던 2021 선거구 지도를 복귀시키지는 않았다.¹¹⁾ 대신 주대법원은 주의회에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나. 관할권 여부 판단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연방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연방헌법 제3조 제2항¹²⁾은 ‘사건(Cases)’과 ‘쟁송(Controversies)’에 대하여 연방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personal stake)를 가질 것과,¹³⁾ 사건의 청구 단계에서만 아니라 심사의 모든 단계에서 다툼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¹⁴⁾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이 Harper II 판결에서의 판단을 철회하고 Harper I 판결을 뒤집었다고 해서 이 사건의 쟁송성이 상실(moot)되는 것은 아니다. 주대법원은 Harper I 판결을 파기하였지만 2021 선거구 지도의 사용을 금지하였던 결론을 바꾸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만일 연방대법원이 Harper I 판결을 뒤집는다면 2021 선거구 지도는 다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므로 당사자

11) 주의회 측 피고들도 2021 선거구 지도가 복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미 2021 선거구 지도는 한 달여 만에 파기되어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하였고, 2022년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2022 선거구 지도를 기반으로 선거가 완료되어 새로운 주의원들이 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선거에 2021 선거구 지도가 사용된다면 많은 현직 주의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보았다. 참고로 ‘현직의원의 보호(incumbency protection)’는 전통적인 선거구 획정 원칙 중 하나로 꼽힌다.

12) **미국 헌법 제3조 제2항 (사법권과 관할권)**

사법권은 이 헌법과 합중국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합중국이 한 편의 당사자인 쟁송, 2개의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의 쟁송, 한 주와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쟁송, 상이한 주의 시민 사이의 쟁송, 다른 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같은 주의 시민 사이의 쟁송, 그리고 어떤 주나 그 주의 시민과 외국, 외국 시민 또는 외국 신민과의 사이의 쟁송에 미친다. (※ 밑줄 친 부분은 헌법 수정 제11조에 의해 개정되었다.)

13) Baker v. Carr, 369 U. S. 186, 204 (1962).

14) Genesis HealthCare Corp. v. Symczyk, 569 U. S. 66, 71 (2013).

들은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에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¹⁵⁾

또한 연방대법원의 관할권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주의 최고법원에 의해 내려진 최종판결’을 포함시키는 연방법률 28 U. S. C. § 1257(a) 규정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Harper I 판결을 심사할 관할권을 갖는다.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420 U. S. 469 (1975) 판결은 하급심 법원에 의한 추가적인 소송과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이 28 U. S. C. § 1257(a)의 목적상 주 최고법원의 연방문제에 관한 판결을 최종판결로 대했던 사건들을 적어도 네 가지 유형으로 상술하였다. 그 중 하나가 주 최고법원에 의해 연방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건이 장래 주법원의 소송절차의 결과에 상관없이 유지되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요하는 경우이다.¹⁶⁾ Harper I 판결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급심 법원의 후속 소송절차가 연방문제에 관한 Harper I 판결의 분석을 바꾸지도 않고 2021 선거구 지도를 배척하였던 Harper I 판결의 효과를 무효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Harper I 판결은 연방헌법상 선거조항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였고 그 판단은 당사자들을 계속하여 구속하고 있으며, 우리가 Harper I 판결을 뒤집는다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21 선거구 지도는 다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제3조 및 28 U. S. C. § 1257(a)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다.

다. 사법심사의 역사

Marbury v. Madison, 1 Cranch 137 (1803)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심사하고 위헌인 법률을 무효화할 권한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Marbury 판결 이전에도 미국 역사의 초창기부터 법원은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할 책무를 받아들여 왔다. 주법원들은 1787년 헌법제정회의

15) Chafn v. Chafn, 568 U. S. 165, 172 (2013).

16)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420 U. S. 469, 480 (1975).

(Constitutional Convention) 이전부터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였다.¹⁷⁾ 사법심사는 조심스럽게 생겨났으나 건국 시대 동안 계속하여 성숙되었다. 제임스 매디슨은 사법심사를 헌정제도의 핵심 덕목 중 하나로 극찬하였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법원이 사법심사의 의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법심사의 원리는 대부분의 주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¹⁸⁾ 이러한 사법심사의 개념은 Marbury 판결 즈음에는 견고히 자리 잡아 Marshall 대법원장은 사법심사를 ‘우리 사회의 기본원칙 중 하나’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라. 선거조항상 주의회가 주헌법의 제한을 면제 받는지 여부

우리는 선거조항이 이와 같은 기본원칙의 예외인지를 판단하도록 요청받았다. 선거조항은 주의회를 일반적인 주의 사법심사로부터 격리시키지 않는다.

(1) 관련 선례 검토

우리는 우선 주헌법 조항과 연방헌법상 선거조항에 따른 주의회의 권한 행사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Ohio ex rel. Davis v. Hildebrant, 241 U. S. 565 (1916)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주의 유권자들이 대중투표(popular vote)¹⁹⁾로 주의회가 제정한 주법률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도록 허용하는 오하이오 주헌법 규정과 연방헌법상 선거조항의 적용 문제를 검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상 선거조항이 동조항에 따른 주의회의 행위를 주민투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배제하

17) G. Wood,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Republic 1776-1787, pp. 454-455 (1969).

18) The Federalist No. 78, pp. 466, 482 (C. Rossiter ed. 1961).

19) popular vote는 유권자 투표라고도 하며,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college vote)와 비교될 수 있다.

지 않는다는 오하이오 주대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선거조항에 대립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Hildebrant 판결로부터 16년 후, 연방대법원은 *Smiley v. Holm*, 285 U. S. 355 (1932) 판결에서 주지사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시 인구조사에 따라 미네소타 주는 한 개의 연방하원의원 의석을 잃게 되었고 주의회는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였다. 그러나 주지사는 주헌법이 그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 선거구 획정안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구 지도가 시행되자 시민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선거구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네소타 주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며 연방헌법상 선거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무제한, 무한정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판단하였다. 주대법원은 선거조항이 주의회에 선거구를 획정할 전적인 권한을 주었으며 주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관할 밖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전원 일치로 주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가 연방헌법상 선거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선거조항에 따른 주의회의 권한 행사는 주가 규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⁰⁾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어디에도 주의회에 주헌법 규정을 벗어난 법률 제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²¹⁾ *Smiley* 판결은 건국시대의 규정과 헌법 구조, 역사적 관행에 근거하였으며, 이는 우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Arizona State Legislature v. Arizona 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n*, 576 U. S. 787 (2015) 판결에서 Hildebrant 판결과 *Smiley* 판결의 판시를 보강하였다. 해당 사건은 주헌법을 개정하여 선거구 획정 권한을 독립된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주민발의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사건이었다. 애리조나 주의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지도를 문제 삼으며 선거조항은 독립된 위원회에 선거

20) *Smiley v. Holm*, 285 U. S. 355, 367 (1932).

21) *Id.*, at 368.

구 획정을 맡기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선거조항이 주헌법의 입법권 행사 견제 권한을 박탈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건국시대의 사전들은 ‘의회(Legislature)’라는 단어를 폭넓게 정의하였고²²⁾ 애리조나 주민들은 선거구 재획정의 입법권을 독립된 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대안적인 입법 절차를 만들 권한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렸다.²³⁾ 즉, 연방대법원은 선거조항이 명시적으로 주의회를 지칭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다른 기구에 선거구 재획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국가 자신의 정치적 과정을 수립할 자치권을 보유한다고 실시하였다.²⁴⁾ 연방대법원은 Hildebrant 판결과 Smiley 판결에서 옹호한 핵심원칙을 수용하였다. 어떤 기관이 선거구 획정의 임무를 맡든지 간에 그 기관은 주헌법에 정해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Smiley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전원일치로 수용한 논증을 존중해야 한다. 즉, 주의회는 법률의 제정에 관하여 주헌법이 부과한 요건으로부터 독립되어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수는 없다.²⁵⁾

(2) 피고들과 반대의견이 인용한 선례와 이 사건의 차이

주의회 측 피고들과 반대의견은 연방헌법이 주의회에 연방하원의원 선거를 규정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연방헌법만이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선례들을 무시하는 것일 뿐이다. Hildebrant 판결, Smiley 판결, Arizona State Legislature 판결은 주의회가 연방선거를 운용하는 규칙을 정함에 있어 선거조항이 주의회에 독점적이

22) Arizona State Legislature v. Arizona 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n, 576 U. S. 813, 814 (2015).

23) Id., at 817.

24) Id., at 816.

25) Smiley, 285 U. S., at 373.

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주의회 측 피고들과 반대의견은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의회는 자신을 있게 한 바로 그 문헌의 규정에 구속된다는 건국자들의 해석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의회가 연방선거를 규율할 연방헌법상의 권한을 수행할 때, 주의회는 주헌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헌법에 의해 구속되는 법 제정 기구로서도 기능하는 것이고, 동시에 연방헌법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으로서도 기능하는 것이다. 주헌법과 연방헌법 모두 주의회의 권한 행사를 제한한다.

피고들은 연방대법원의 McPherson v. Blacker, 146 U. S. 1 (1892) 판결에서의 선거인조항(Electors Clause, 연방헌법 제2조 제1항 제2호²⁶⁾)에 대한 분석을 인용하였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선거인조항은 선거조항과 유사하게 “각 주는 그 주의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McPherso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미시간 주의회가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에 부여된 투표권을 주 전체가 아닌 각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각 선거구에서 이긴 쪽이 주의 선거인단 표 중 하나를 획득하도록 한 것²⁷⁾에 대해 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함에 있어 선거인조항은 주의회에 목적 달성 방법을 독점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실시하였다.

그러나 McPherson 판결은 주헌법 규정과 주의회의 행위 사이의 갈등 -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 과는 무관한 사건이었다. McPherson 판결은 주

26)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각 주는 그 주의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합중국의 위임 또는 유급 공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27) 현재 미시간 주를 포함한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그 주의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 이긴 대선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선거인단 명부를 채택한다(승자독식 제도). 단,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는 선거인단을 뽑는 보다 복잡한 제도를 갖고 있다. 주 전체 투표에서 이긴 쪽이 2명의 선거인 자리를 가져가고, 각 연방하원의원선거구마다 이긴 쪽이 각 1명의 선거인 자리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네브라스카 주 전체에서 공화당 후보자가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하고, 주의 세 개의 연방하원의원선거구 중 두 곳은 이기고 한 곳에서 민주당에 졌다면, 공화당은 총 4명의 선거인을, 민주당은 총 1명의 선거인을 갖게 된다.

의회 자신이 선거인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사건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강조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였다. 실상 해당 사건에서 Fuller 연방대법원장의 법정의견은 “입법권은 주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권한이다”²⁸⁾라고 실시하였다.

피고들과 Thomas 대법관은 연방대법원 판결인 Leser v. Garnett, 258 U. S. 130 (1922) 판결도 원용하였다. Les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주헌법 규정이 주의회의 비준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여성의 투표권을 규정한 연방헌법 수정 제19조²⁹⁾는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주의회가 연방헌법 수정조항을 비준할 때 연방헌법에서 도출된 연방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주민들이 가하고자 하는 제한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하였다.³⁰⁾

그러나 Leser 사건에서 주의회는 전통적인 입법 행위가 아니라 비준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고, 현재 이 사건은 - Hildebrant 판결과 Smiley 판결처럼 - 주의회의 입법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주의회가 선거조항에 따른 입법 행위를 할 때 주의회는 그러한 입법 행위에 대한 주헌법상의 일반적인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연방대법원 선례들은 ‘선거조항에 따른 주의회의 행위는 순전히 연방적 성격을 가지며 연방헌법상의 제한에 의해서만 통제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배척해 왔다.

(3) 절차적 제한과 실체적 제한을 구분하는 해석에 대한 비판

피고들은 적어도 일부 주헌법 규정들은 주의회의 선거조항상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지만, Smiley 판결과 Hildebrant 판결은 절

28) McPherson v. Blacker, 146 U. S. 25 (1892).

29) 미국 헌법 수정 제19조 (여성의 투표권)

¹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²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30) Leser v. Garnett, 258 U. S. 130, 137 (1922).

차적 제한과 실제적 제한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헌법은 주의회가 연방 선거에 관해 규정함에 있어 절차적 제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선례들은 그러한 구별을 한 적이 없고 피고들도 설득력 있는 구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주지사가 법률안이 가져올 정책적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지사는 입법에 절차적 제한을 가한 것인가, 실제적 제한을 가한 것인가? Smiley 판결은 그런 애매한 질문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명확한 구분선을 찾을 수 없다.

(4) 역사적 관행의 뒷받침

역사적 관행 역시 주의회가 선거조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 주헌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건국 직후 두 개의 주헌법(델라웨어 주헌법과 메릴랜드 주헌법)은 명시적으로 선거조항상의 주의회의 행위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건국 무렵 여러 주헌법들은 연방선거의 방식을 규제하였다.

건국자들은 선거조항을 백지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표자들은 각 주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년 지명되어야 한다”라는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³¹⁾의 규정을 차용하였다. 연합규약이 채택되었을 당시, 여러 주들은 대표자의 지명을 규율하였고, 이는 건국자들이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회의 행위를 주헌법 규정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으로 보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마. 연방대법원의 의무

31) 미국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13개 식민지의 동맹과 연합을 정한 것으로 1777년에 채택되어 1781년에 발효되었고, 이후 1789년 미국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비록 선거조항이 주의회를 주법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으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법원들이 무제한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선거조항은 명시적으로 각 주의 주의회에 이 조항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주법률에 관한 주법원의 해석이 연방법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주법원들은 연방 선거에 관하여 규정할 주의회의 권한을 횡탈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사법심사의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이 선거조항에서 도출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 피고들은 이 쟁점에 대해 상고허가신청서나 준비서면에 유의미하게 제시한 바가 없으며, 구두변론에서도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주법원은 주의회가 선거조항이 주의회에 부여한 권한 하에서 입법 행위를 할 때 주헌법상의 제한을 적용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도 사법심사의 임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주법원들은 주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연방헌법 제1조 제4항의 선거조항에 의해 주의회에 특별히 유보된 역할을 위헌적으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의 판결은 유지된다고 판결하는 바이다.

2. Kavanaugh 대법관의 보충의견(1인 의견)

나는 법정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늘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에 관한 주법률은 주법원의 일반적인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옳게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거조항이 주의회에 연방선거를 규정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주법원들

이 무제한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역시 옳다. 따라서 선거조항에 관한 사건에서 주법률에 대한 주법원의 해석은 연방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이러한 연방법원의 심사는 주법원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헌법상 규정된 주의회의 역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³²⁾

문제는 연방법원이 선거조항에 관한 사건에서 주법률에 대한 주법원의 해석을 심사하는 데 있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이다. *Bush v. Gore*, 531 U. S. 98, 115 (2000) 사건에서 보여진 Rehnquist 대법원장의 기준은 직설적이다 : 주법원이 공정한 해석이 요구하는 바를 넘어 용인할 수 없이 주법률을 왜곡하는가.³³⁾ Souter 대법관의 기준 역시 비슷하다 : 주법원이 주법률의 합리적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섰는가.³⁴⁾ 송무차관도 또다른 비슷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 주법원이 주법률에 대한 진정으로 일탈된 해석에 이르렀는가.³⁵⁾

세 가지 기준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한 논지를 전달한다. 연방법원이 연방선거 사건에서 주법률에 대한 주법원의 해석을 심사할 때 그 심사는 존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나 존중이 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Rehnquist 대법원장의 기준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 기준은 주법률에 대한 주법원의 해석뿐만 아니라 주헌법에 대한 주법원의 해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이 주헌법이나 기타 주법률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특정한 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없었고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 법정의견은 단지 “주법원들이 무제한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주법원들은 일반적인 사법심사의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법정의견은 연방선거 사건에서 주법원의 판단에 대한 연방법원의 심사에 관한 일반원칙들을 인식하고 설명하였다. 장래에는 아마도 연방대법원이 그러한 일반원칙에서

32) *Bush v. Gore*, 531 U. S. 98, 115 (2000) (Rehnquist, C. J., concurring).

33) *Ibid.*

34) *Id.*, at 133 (dissenting opinion).

35) Brief for United States as Amicus Curiae 27.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추출해내게 될 것이다.

3. Thomas 대법관의 반대의견(3인 의견)³⁶⁾

연방대법원은 문제(questions)와 쟁점(issues)이 아니라 ‘사건(Cases)’과 ‘쟁송(Controversies)’을 해결하기 위해 심판한다.³⁷⁾ 그 필연적인 결과로 연방대법원은 쟁송성이 상실된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나 소송당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권고적 의견을 제공할 권한이 없다.³⁸⁾

오늘 법정의견은 이러한 맥락을 깨뜨렸다. 법정의견은 주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파기되고 대체된 중간판결을 확정하였다. 주법원의 최종판결은 모든 주장에 있어 상고인들(제1심의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내려졌다. 법정의견이 의견을 밝힌 쟁점은 더 이상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는 반론의 여지없이 쟁송성을 상실하였으며 법정의견도 명백히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이다. 상고허가 신청은 기각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법정의견에 정중히 반대한다.

가. 이 사건 쟁송성의 상실 - 상고허가 신청 기각 의견 (I)³⁹⁾

이 사건은 간단명료하다. 원고들은 주법에 따라 여러 주공무원들을 상대로 제소하였고, 상고인들은 주법과 연방법상의 변론을 펼쳤다. 하급심 법원의 중간판결에서 주대법원은 두 가지 변론을 모두 배척하고 후속 소송절차를 위해 사건을 환송하였다. 우리는 상고인들의 연방법상의 변론을 검토하기 위해 심사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소송에서 주법원은 상고인들의 대안적인

36) Thomas, Gorsuch, Alito 대법관의 의견. 다만 Alito 대법관은 파트 I 부분(본문 3. 가.)에 대해서만 합류하였다.

37) Arizona Christian School Tuition Organization v. Winn, 563 U. S. 125, 132 (2011).

38) St. Pierre v. United States, 319 U. S. 41, 42 (1943) (per curiam).

39) 각주 36)에서 설명하였듯이 Alito 대법관은 파트 I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하 반대의견 부분에서는 각 목차 끝에 괄호로 원문의 목차를 병기하였다.

주법상의 변론을 재논의하였고 그것이 실체상의(meritorious) 항변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주법원은 최종적으로 사건 전체를 상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확정적으로 기각하였다(dismissing with prejudice)⁴⁰).

이 사건은 쟁송성에 관한 간단한 사건이다. 연방법적 항변은 더 이상 이 사건에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가 그 항변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니면 침묵을 지키든 간에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똑같은 것이다. 법정의견은 이러한 사실에 진지하게 반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정의견은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정의견은 연방헌법 제3조상의 법원으로서가 아니라 주의회의 특별기관(ad hoc branch)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는 결코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Harper I 판결은 상고인들의 주법상 사법심사적합성 항변과 연방헌법상 선거조항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상고인들은 연방대법원에 연방헌법에 관한 항변에 한해 Harper I 판결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Harper I 판결 이후 환송심에서 제1심 법원은 2022년 선거를 위한 수정된 선거구 지도를 채택하였다. 이에 상고인들은 다시금 이 사건을 주대법원에 가져갔고 주대법원은 Harper I 판결을 적용하여 제1심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였다(Harper II 판결). 그러나 그 후 상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주대법원은 Harper I 판결과 Harper II 판결의 근본적인 근간이자 중요한 쟁점인 ‘당파적 게리맨더링 주장이 주헌법 하에서 사법심사적합성을 갖는가’에 대해 재심리하였고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정치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Harper III 판결).

즉, 이렇게 이 사건은 끝났고 상고인들이 승리하였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에는 더 이상 당면한 쟁송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상고인들은 Harper I 판결의 판결로 받은 피해가 없고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우리가 선거조항에 대한 상고인들의 항변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피상고인의 청구는

40) 여기서 확정적으로 기각(dismissing with prejudice)하였다 함은 재소가 허용되지 않은 기각을 의미한다.

영구기각되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법정의견은 상고인들의 연방 차원의 항변이 어떻게 여전히 이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⁴¹⁾ 그러나 법정의견은 그러지 못하였다. 연방대법원이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고, 쟁점사항(question presented)⁴²⁾은 쟁송성을 상실하였으며, 상고허가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나. 법정의견의 본안 논증에 대한 비판 (II)

나는 기쁘게 여기서 멈출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관할권을 갖지 않은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논하길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정의견의 본안에 대한 논증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주의 주민들이 주의회가 규정할 권한을 가진 연방하원의원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하여 주헌법상의 한계를 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상고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세 가지 전제에 근거한다.

첫 번째 전제는 한 주의 주민들은 미국 전체 시민들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제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⁴³⁾ 이 생각은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의 우위성의 필연적 결과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⁴⁴⁾

두 번째 전제는 연방하원의원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주 권한의 본래의 특권(original prerogative)이 아니므로 그러한 권한은 주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위임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전제는 연방대법원의 선례들에 의해서도 확고하게 지지된다. 연방대법원은 주에 연방하원의원 선

41) North Carolina v. Rice, 404 U. S. 244, 246 (1971) (per curiam).

42) 쟁점사항(question presented)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허가 신청서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 첫 페이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으로 연방대법원은 이를 통해 확정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43) McCulloch v. Maryland, 4 Wheat. 316, 429 (1819).

44) Id., at. 436.

거에 관한 권한을 주는 다른 헌법 조항이 없으므로 선거조항이 그러한 권한의 배타적 위임이라고 판단해 왔다.⁴⁵⁾

세 번째 전제는 선거조항의 ‘각 주의회(the Legislature thereof)’가 주의 주민들을 뜻하거나 획일적인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헌법 하에서 존재하는 입법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주’와 ‘의회’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에도 부합하고 연방대법원의 선례들과도 조화를 이룬다. 주와 주의회는 매우 다른 정치적 존재로, 주가 주헌법에 의해 승인되고 제한되는 정부 아래 조직된 자유로운 시민들의 정치적 공동체라면, 주의회는 법률을 만드는 대의기관을 의미한다.⁴⁶⁾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상고인들은 자신들의 결론에 다다른다. 연방하원의원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을 규정함에 있어 주의 입법 기관이나 권한은 연방헌법에서 도출된 연방 기능을 수행하며, 따라서 이는 주의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제한을 뛰어넘는다.⁴⁷⁾ 이처럼 각 전제는 연방대법원 선례들도 쉽게 들어맞는다. 상고인들의 결론은 McPherson 판결에서의 선거인조항의 비슷한 법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도 잘 반영한다.

법정의견은 상고인들의 결론을 배척하였지만 그러한 결론의 근거가 된 전제들을 배척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Hildebrant 판결, Smiley 판결, Arizona State Legislature 판결이 상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법정의견의 논증은 지지할 수 없다. 해당 사건들에서의 쟁점과 이 사건에서의 쟁점 사항 사이의 원칙적인 차이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Hildebrant 판결, Smiley 판결, Arizona State Legislature 판결에서 관련된 주헌법 조항은 주 내에서의 입법권의 배분에 관해 다루었고, 어떠한 행위가 입법권의 행사가 되는지를 정하였다. 즉, 이 판결들은 각 주의회를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대해 다루었던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들은 주의 주민들이 절차적으로 완전한 입법권의 행사로 유효하게 규정된 시간, 장소, 방식에 실체적인 제한을 부과

45) Cook v. Gralike, 531 U. S. 510, 522, 523 (2001); United States v. Classic, 313 U. S. 299, 315 (1941).

46) Smiley, 285 U. S., at 365 (quoting Hawke v. Smith, 253 U. S. 221, 227 (1920)).

47) Leser, 258 U. S., at 137.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그야말로 다른 문제이다. 어떻게(how)와 무엇(what)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⁴⁸⁾

이 사건에서 누구도 선거조항이 주의회를 만들었다거나 주의 입법과정을 규정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일 상고인들의 전제가 유지된다면, 주헌법은 누가(who) 의회를 구성할 것인지 명시하고 입법권이 어떻게(how) 행사되는지는 규정할 수 있지만, 연방 선거를 위해 무슨(what) 실제적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가는 통제하지 못한다.

법정의견은 실제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사이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법정의견은 주지사가 법률안이 가져올 정책적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지사는 입법에 절차적 제한을 가한 것인지 실제적 제한을 가한 것인지 질문하였다. 답은 단순명료하다. 법률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은 입법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 문제는 무엇(what)이 아닌 누구(who)의 문제이며 따라서 주의 통치조직의 문제⁴⁹⁾이다.

그러나 입법권이 할 수 있는 것(what)에 대한 실제적 제한은 전혀 다른 정당화 이유를 요한다. 그러나 법정의견은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법정의견은 선거조항에 규정된 권한의 근원이나 그러한 권한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 법정의견은 선거조항 관련 입법에 대한 주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은 이 사건 쟁점사항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지 못한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연방하원의원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에 관한 법률은 - 이를 규정할 권한이 주의 주민들이 아니라 연방헌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 주헌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옳든 그르든, 이 문제는 주법원이 사법심사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지와는 무관하다.

48) J. Kirby, Limitations on the Power of State Legislatures Over Presidential Elections, 27 Law & Contemp. Prob. 495, 503 (1962).

49) Smiley, 285 U. S., at 368.

다. 법정의견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우려 (III)

법정의견은 주법원 및 연방 하급법원이 선거조항에 관한 사건에서 어떻게 사법심사를 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으로 의견을 마무리하였다. 법정의견은 선거조항에 대한 해석에 명확한 논증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정의견이 그린 간략한 밑그림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오늘 법정의견이 앞으로 사법부에 닥칠 심각한 문제의 전조가 될까 우려된다.

법정의견은 *Bush v. Gore* 결정을 인용하였지만, 이는 이상한 유추이다. *Bush* 판결과 *Harper I* 판결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Bush* 판결에서 주법원의 판결은 주법률의 해석에 기초한 것이었고, 따라서 주요 문제는 주법원이 명백히 표명된 의회의 의도에서 벗어나 공정한 해석이 요구하는 바를 넘어 용인할 수 없이 주법률을 왜곡하는가⁵⁰)였다. 반면, *Harper I* 판결에서 주법원은 명백히 표명된 의회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틀림없었다; 주법원은 의회의 입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정의견은 *Harper I* 판결이 그 자체로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선거조항이 주법원에 실제적인 주헌법 조항을 연방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주법원들은 연방선거를 규정할 주의회의 권한을 횡탈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사법심사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연방법원의 감독을 받아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의를 받았다. 따라서 법정의견은 *Bush* 판결에서 예상된 법률해석에 대한 심사가 주헌법에까지 확장된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법정의견은 주선거법에 관한 *Bush* 판결 스타일의 쟁송이라는 새로운 - 그리고 훨씬 더 불분명한 - 영역을 열었다. 법정의견의 틀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일반적인 사법심사의 한도’의 어떤 일반화된 개념을 발전시켜야

50) *Bush*, 531 U. S., at 115 (Rehnquist, C. J., concurring).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Rucho 판결로 당파적 게리맨더링 문제를 아예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의 당파적 게리맨더링 판단이 ‘일반적인 사법심사의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심사적합성의 부조화에 관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법정의견의 조언은 방대한 범위의 문제들을 끌어들이는다. 무엇이 ‘일반적인 사법심사의 한도’인가? 이에 따르면 어떤 헌법해석 방법이 허용되는가? 그러한 방법은 주마다 다른가? 선례구속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한 법정의견의 틀이 잠재적으로 주헌법의 넓은 범위에서 연방문제의 성격을 띠게 하는 효과를 낳고, 연방법원이 이에 대한 유의 미하거나 원칙적인 재판을 할 수 없게 될까 우려된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반적인 사법심사의 한도’는 실제에서는 관대한 기준이 될 것이고, 이러한 주헌법의 연방화는 주헌법 문제로 연방법원 사건부(docket)를 늘어나게 하여 주법원에 대한 존중이라는 포괄적인 설명으로 빠르게 해결하게 될 것이다. 한편 예외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예외는 빠르게 진화하고 정치적으로 가열된 논쟁의 한복판에서 우연히 나타날 것이고, 연방선거의 승자들은 주법원이 주헌법의 해석에 있어 ‘일반적인 사법심사의 한도’를 넘었다는 연방법원의 신속한 판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나는 쟁송성을 상실한 사건에서 권고적 의견으로 연방사법부를 이러한 불확실한 길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법정의견에 정중히 반대한다.

III.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미국 헌법의 선거조항이 연방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을 각 주의 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법원 등의 다른 기관들에 의한 견제

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독립 주의회 이론(independent state legislature theory)’의 인정 여부로 주목을 받았다. 만일 이 이론이 받아들여지면 주의회가 연방선거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고,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조항도 선거조항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주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원하는 대로 선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주의회가 선거조항에 따른 입법 행위를 할 때에는 주헌법상의 일반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하여 독립 주의회 이론을 배척하였다. 또한 연방법원도 사법심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법원에 대한 연방법원의 감독 역할도 언급하였다.

이 판결로 연방대법원은 연방하원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에 대한 주의회의 독점적이고 독립적인 권한 주장을 저지하였으며, 주의회의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걸고, 향후의 연방선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